

의안번호	2201450
의 퇴 인	황정아 의원
회 답 일	2024. 7. 8.
추계번호	24F1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3년 연장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상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하고, ② 기술유형별로
R&D 세액공제율을 10~20%p 상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6년 4조
5,329억원, 2030년 1조 7,432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7조 4,462억원(연평균 3조 4,89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특례 강화(안 제10조 제1항)	-45,329	-46,689	-48,089	-16,924	-17,432	-174,462	-34,892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 R&D 적용기한 3년 연장	-20,542	-21,158	-21,793	-	-	-63,492	-21,164
- 기술유형별 R&D 세액공제율 10~20%p 상향	-24,787	-25,531	-26,297	-16,924	-17,432	-110,970	-22,194

주: 1.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 제시된 기간 이후로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2. 항목별 연평균 금액은 세수효과가 발생한 기간을 대상으로 계산함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 제1항(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안) 2027년 12월 31일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 일반 R&D: (당기분) 중견 8→18, 중소 25→45 (증가분) 대 25→35, 중견 40→50, 중소 50→70 - 신성장·원천기술 R&D: 대 20→30, 중견 20→30, 중소 30→50 - 국가전략기술 R&D: 대 30→40, 중견 30→40, 중소 40→60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0조 제1항(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부칙에 따라 개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되며,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의 적용기한(2027년 말)을 감안 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를 상향의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6~2028년 발생
 - 일몰이 없는 일반 R&D 세액공제를 상향의 세수효과는 이후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 추계는 5년간의 세수효과를 제시함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실적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기술별 2022년 R&D 세액공제 실적을 활용하되, 국가전략기술 R&D 실적은 기획재정부 답변자료¹⁾ 상 2023년 잠정 실적을 활용
 - 정부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²⁾에서 전망한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에 따라 향후 공제액 실적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
 - － 정부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치는 2025년까지 존재하며, 이후 기간은 2025년의 증감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해당 R&D에 대해서는 일반 R&D에 대한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 공제율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

1) 기획재정부,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2023. 12.

2)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4.7.3.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별(일반/신성장·원천/국가전략기술)로 R&D 세액공제액(2022년)을 기업규모별로 안분 및 추정
 - 일반 R&D의 경우 당기분과 증가분이 구분된 공제실적을 알 수 없으나,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자료」를 활용하여 구분
 - 정부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²⁾에서 전망한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에 따라 향후 R&D 세액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며, 세액 공제율 상향 효과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
-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
-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연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등에 따라 기업의 R&D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추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3년 연장 + 기술유형별 R&D 세액공제율 10~20%p 상향

(1) 제도 개요 및 실적

- (제도 개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술별로 다음과 같음
 - 일반 R&D에 대한 세액공제는 증가분(전년 대비 초과분)과 당기분 중 유리한 것을 기업이 선택함
 - 증가분 = (당해 일반R&D 비용 - 직전 4년 일반 R&D 연평균 비용) × 공제율
 - 당기분 = 당해 일반R&D 비용 × 공제율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해서는 일반 R&D(당기분)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신성장·원천기술 R&D: 대기업 20%,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 국가전략기술 R&D: 대기업 30%, 중견기업 30%, 중소기업 40%
- * '매출액 대비 R&D 비중 × 3 (한도 10%)' 를 한도로 추가공제율 적용

[표 2]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

(단위: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증가분	25	40	50
	당기분	최대 2 ²⁾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20~30 ¹⁾	30~40
국가전략기술		30~40	30~40	40~50

주: 1) 코스닥에 상장한 중견기업의 경우, 공제율 25~40% 적용함

2) 일반기업의 당기분 공제율은 '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 1/2' 로 계산함

□ (공제실적) 2022년 R&D 세액공제 실적은 총 3조 6,173억원 수준

[표 3] 기술유형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실적(법인세): 2022년

(단위: 억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계
일반 R&D	14,512	2,535	5,811	22,858
신성장·원천기술 R&D	292	324	8,176	8,791
국가전략기술 R&D	18	0.2	4,506	4,524
계	14,821	2,859	18,494	36,173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를 2027년 말로 3년 연장하는 내용과 기술유형별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10~20%p 상향하는 내용

[표 4]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율(기본공제율) 상향안

(단위: %)

		현행			개정안		
		대	중견	중소	대	중견	중소
일반 R&D (택1)	당기분	최대 2 ¹⁾	8	25	최대 2 ¹⁾	18	55
	증가분	25	40	50	35	50	70
신성장·원천 R&D		20	20	30	30	30	50
국가전략기술 R&D		30	30	40	40	40	60

주: 1) '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비중 × 1/2' (2% 한도)

(2) 추계방법

①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3년 연장

□ (향후 공제액 전망치) 2022년 및 2023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에 따라 향후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 : ('24년) 2.5%, ('25년) 3.0%

※ 2026년 이후는 2025년 증감률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

[표 5]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액 전망

(단위: 억원)

<신성장·원천기술>	2024	2025	2026	2027	2028
중소기업	311	319	329	339	349
중견기업	346	354	365	376	387
대기업	8,730	8,949	9,217	9,494	9,779
계	9,388	9,622	9,911	10,208	10,515
<국가전략기술>	2024	2025	2026	2027	2028
중소기업	33	33	34	35	36
중견기업	9	9	10	10	10
대기업	12,130	12,433	12,806	13,190	13,586
계	12,171	12,476	12,850	13,236	13,63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수효과) 앞서 전망한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일반 R&D 공제율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에 대한 공제율 특례가 종료될 경우, 해당 R&D는 일반 R&D 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가정

[표 6]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3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2026~2028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신성장·원천기술 R&D	일반 R&D 공제율 기준 (A)	1,342	1,382	1,423
	신성장·원천 공제율 기준 (B)	9,911	10,208	10,515
	차이 (B-A)	8,569	8,826	9,091
국가전략기술 R&D	일반 R&D 공제율 기준 (A)	878	904	931
	신성장·원천 공제율 기준 (B)	12,850	13,236	13,633
	차이 (B-A)	11,972	12,331	12,7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10~20%p 상향

□ 기술별·기업규모별 R&D 세액공제액(2022년)이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 상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에 따라 변동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향후 공제액을 전망하고, 개정안의 공제율 상향안을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 : ('24년) 2.5%, ('25년) 3.0%
※ 2026년 이후는 2025년 증감률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
- 일반 R&D 당기분/증가분 실적 구분은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바탕으로 추정
 - 대기업 31.8%, 중견기업 33.3%, 중소기업 16.1%
- 개정안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안
 - 일반 R&D: (당기분) 중견 8 → 18, 중소 25 → 45
(증가분) 대 25 → 35, 중견 40 → 50, 중소 50 → 70
 - 신성장·원천기술 R&D: 대 20 → 30, 중견 20 → 30, 중소 30 → 50
 - 국가전략기술 R&D: 대 30 → 40, 중견 30 → 40, 중소 40 → 60

[표 7] 기술유형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액공제액 증가: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일반 R&D	현행 공제율 적용 (A)	중소기업	16,360	16,851	17,356	17,877	18,413
		중견기업	2,857	2,943	3,032	3,122	3,216
		대기업	6,552	6,748	6,951	7,159	7,374
		소계	25,769	26,542	27,339	28,159	29,004
	개정안 공제율 적용 (B)	중소기업	28,396	29,247	30,125	31,029	31,960
		중견기업	5,477	5,642	5,811	5,985	6,165
		대기업	7,384	7,606	7,834	8,069	8,311
		소계	41,257	42,495	43,770	45,083	46,435
	차이 (B-A)	중소기업	12,036	12,397	12,769	13,152	13,546
		중견기업	2,620	2,698	2,779	2,863	2,949
		대기업	832	857	883	910	937
		소계	15,488	15,952	16,431	16,924	17,432

신성장· 원천기술 R&D	현행 공제율 적용 (A)	중소기업	329	339	349	359	370
		중견기업	365	376	387	399	411
		대기업	9,217	9,494	9,779	10,072	10,374
		소계	9,911	10,208	10,515	10,830	11,155
	개정안 공제율 적용 (B)	중소기업	548	564	581	599	617
		중견기업	548	564	581	598	616
		대기업	13,826	14,241	14,668	15,108	15,561
		소계	14,922	15,369	15,830	16,305	16,794
	차이 (B-A)	중소기업	219	226	233	—	—
		중견기업	183	188	194	—	—
		대기업	4,609	4,747	4,889	—	—
		소계	5,010	5,161	5,316	—	—
국가전략 기술 R&D	현행 공제율 적용 (A)	중소기업	34	35	36	38	39
		중견기업	9.7	10.0	10.3	10.6	10.9
		대기업	12,806	13,190	13,586	13,993	14,413
		소계	12,850	13,236	13,633	14,042	14,463
	개정안 공제율 적용 (B)	중소기업	52	53	55	56	58
		중견기업	13	13	14	14	15
		대기업	17,075	17,587	18,115	18,658	19,218
		소계	17,139	17,653	18,183	18,728	19,290
	차이 (B-A)	중소기업	17	18	18	—	—
		중견기업	3	3	3	—	—
		대기업	4,269	4,397	4,529	—	—
		소계	4,289	4,418	4,550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추계결과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하고, 기술유형별로 R&D 세액공제율을 10~20%p 상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6년 4조 5,329억원, 2030년 1조 7,432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7조 4,462억원(연평균 3조 4,89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특례 강화(안 제10조 제1항)	-45,329	-46,689	-48,089	-16,924	-17,432	-174,462	-34,892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 기술 R&D 적용기한 3년 연장	-20,542	-21,158	-21,793	-	-	-63,492	-21,164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10~20%p 상향	-24,787	-25,531	-26,297	-16,924	-17,432	-110,970	-22,194

주: 1.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를 추계한 결과로, 제시된 기간 이후로도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
2. 항목별 연평균 금액은 세수효과가 발생한 기간을 대상으로 계산함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이정훈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훈	02-6788-4837	nororand@assembly.go.kr